##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80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고민정・윤종군・민형배

김준혁 • 모경종 • 김문수

전현희 · 정을호 · 김 윤

김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고, 국회 의결로 이를 해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. 그러나 계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장기간 계 엄 상태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정하고, 이를 연장할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·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,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침탈한 뒤 의원 및 직원 출입을 통제하려 함.

향후 이런 위헌 •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, 국회 심의 절차를 신

속히 하고 국회 경비와 의원 투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계엄령 선포 후 통고를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고, 국회 역시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신속히 열도록 하고자 하며, 계엄 상황에서 계엄 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13 조의2 신설).

또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했을지라도,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조 치하게 하고자 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.

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, 국무회의 심의가 지체돼 국민의 우려가 발생했고,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한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, 그러지 아니하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(안 제11조제2항단서 신설).

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을 점령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함. 계엄 발령 시 선거의 중립 성, 공정성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8조제1항 단서, 제2항 신설 등).

##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공고"를 "공고 및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계엄 기간은 최대 14일로 한다. 단, 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일 전인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,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지체 없이"를 "즉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체 없이"를 "즉시"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헌법재판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관리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

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2시간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회 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 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회 출입 금지) 계엄 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군인, 경찰, 정보·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계엄 선포의 <u>공고</u> ) (생	제3조(계엄 선포의 <u>공고 및 기간</u> )
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슬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계엄 기간은 최대 14일로
	한다. 단, 전시에는 그러하지
	아니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변경
	또는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엄
	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일 전
	인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보
	하여야 하고, 국회 재적의원
	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
	의를 받아야 한다.
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 ① 대통	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 ①
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	
는 <u>지체 없이</u> 국회에 통고(通	즉시
告)하여야 한다.	
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	②
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<u>지체</u>	즉시
없이 국회에 집회(集會)를 요구	
하여야 한다.	
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)	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・감독)
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(정보	①

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(생 략)

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③ (생 략) 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

단,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2시간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를 공고하여야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
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
	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
	은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
	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
	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
	조치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의2(국회 출입 금지) 계엄
	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
	•감독을 받는 군인, 경찰, 정
	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
	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.